

1. 가

가. 가

가

가

1)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거나 “수술분류표”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상하여 보험이며, 특약으로 상해사망·후유장해 손해 및 암진단자금, 질병사망등 질병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.

2) ( ) 1 ,

3) 가 ,

2. ,

가.

구 분	담 보	내 용
기 본	입원일당	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(180일 한도)
	수술비	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“수술분류표”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
특 약	24시간 상해사망·후유장해	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
	암진단자금	보장개시일 이후에 암,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 지급 - 암(기타피부암제외)진단 확정시 : 보험가입금액 전액 -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 : 보험가입금액의 10%
	특정암진단자금	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
		보장개시일 이후에 암,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

암입원일당	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아래의 금액을 120일 한도로 지급 - 암(기타피부암제외) 입원시 : 보험가입금액 전액 -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 입원시 : 보험가입금액의 20%
암수술비	보장개시일 이후에 암,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아래의 금액 지급 - 암(기타피부암제외) 수술 : 보험가입금액 전액 -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수술 : 보험가입금액의 10%
암통원일당	보장개시일 이후에 암,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,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때 통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상 - 암(기타피부암제외) 통원시 : 보험가입금액 전액 - 상피내암, 기타피부암, 경계성종양 통원시 : 보험가입금액의 20%
암사망	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이하여 하여 사망하거나 80%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
질병사망	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80%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
뇌졸중진단자금	보험기간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
급성심근경색증진단자금	보험기간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
7대질병입원일당	보험기간중에 7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,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(120일 한도) * 7대질병 제5차 한국표준질병·사인분류(KCD) 중 【별표9】(7대질병 분류표)에서 정한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, 간질환, 고혈압, 당뇨병, 만성하기도질환,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함

1) : 가 . (180 )

2) : 가

3) 24 : 가 .

4) 24 : 가

4) : ( ) 가 , , , 가 10% 1

5) : 가 1

- 6) : ( ), , , 4  
3 1 ( )  
가 , , 가  
20% .(120 )
- 7) : ( ) 가 , , ,  
가 10%
- 8) : ( ), , ,  
1 ( ) 가 , , ,  
가 20%
- 9) : 80% 가 가
- 10) : 80% 가 가
- 11) : 가 1
- 12) : 가 1
- 13) 7 : 7 3 1 가  
7 .(120 )

< ( ) >

-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.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함
- 성병
- 알콜중독,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
- 피보험자의 사형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
-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,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
-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등

- 전문등반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
- 모타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연습 포함) 또는 시운전
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,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-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, 예방접종, 인공유산, 불임시술, 제왕절개 수술
- 피로, 권태,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
- 위생관리,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또는 사고 전 상태대로의 성형수술
- 정상분만, 치과질환. 다만, 상해로 인한 치과진료시에는 보상함

3.

가.

가

가

가 ) 1 , 1 , 40 , ,

		가
		3
		200
		5
		2
		1
		1
	7	3
		<b>40,120</b>

\* , 가 .

4.

가.

가

.

.

1)

:

2)

:

--

.